

임예진 관세법(2026년 대비) 개정사항 (3)

- 관세법 시행규칙 2026. 3. 20. 개정 [시행 2026. 3. 20.]
-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26. 3. 20. 개정 [시행 2026. 3. 20.]

p.246 박스 : 규칙 제33조의2 수정

영 제106조 제3항 관련 시행규칙

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의 반려사유 [규칙 제33조의2]

영 제106조 제3항 ⑤의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는 다음과 같다.

- ① 법 제86조 제6항에 따른 물리적·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·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
- ② 법 제86조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③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·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
- ④ 냉장·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
- ⑤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
- ⑥ 그 밖에 ①부터 ⑤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개정 전	개정 후
①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·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냉장·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	① 법 제86조 제6항에 따른 물리적·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·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86조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·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냉장·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⑤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⑥ 그 밖에 ①부터 ⑤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p.261 : 규칙 제48조 제1항 ④ 신설, ⑤ 수정

제1항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

법 제96조 제1항 ①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- ①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
- ②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
- ③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
- ④ 영 제2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수되지 않은 물품일 것
- ⑤ 물품의 성질·수량·가격·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

개정 전	개정 후
④ 물품의 성질·수량·가격·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	④ 영 제2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수되지 않은 물품일 것 ⑤ 물품의 성질·수량·가격·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

p.279 박스 : 규칙 제37조 제2항 ㉔ 수정

- ㉔ 「암관리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및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

개정 전	개정 후
국립암센터법	암관리법

p.282 : 규칙 제39조 제5항 신설(규칙 제39조 제4항 박스 밑에 신설)

법 제91조 ⑤ 관련 시행규칙

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[규칙 제39조 제5항]

법 제91조 ⑤에서 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.

- ①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 나목 2)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(이하 이 항 및 규칙 제40조 제5항에서 “희귀난치성질환”이라 한다)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「약사법」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(이하 규칙 제40조 제5항에서 “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”라 한다)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
- ②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57조 제1항 제1호의2의 의약품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

p.282 : 규칙 제40조 제5항 신설, 제6항 수정

제5항 의약품에 대한 첨부서류

법 제91조 ⑤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.

- ① 규칙 제39조 제5항 ①의 의약품: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에 해당 의약품의 구매를 신청한 사람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(「의료법」 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말한다)
- ② 규칙 제39조 제5항 ②의 의약품: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확인한 서류

제6항 확인 및 증명 생략

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및 증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.

p.287 : 규칙 제43조 제12항 신설(규칙 제43조 제11항 박스 밑에 신설)

법 제93조 ⑩ 관련 시행규칙

법 제93조 ⑩에서 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” [규칙 제43조 제12항]

법 제93조 ⑩에서 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 자원으로서 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(이하 이 항 및 규칙 제44조 제7항에서 “해외자원개발사업자”라 한다)가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의 방법(이하 규칙 제44조 제7항에서 “해외자원개발방법”이라 한다)을 통해 생산한 자원 중 연간 누적 수입량이 다음의 물량 합계 이내인 것을 말한다.

- ①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(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」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투자 비율 중 해당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광구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부분을 말한다)만큼의 물량
- ② 개발 대상 광구의 연간 생산량 중 제1호에 따른 물량 외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(제1호에 따른 물량의 2배 이내로 한정한다)

p.288 : 규칙 제44조 제7항 신설, 제8항 수정

제7항 법 제93조 ⑩에 대한 신청

법 제93조 ⑩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자원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자원개발방법 등 관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. 이 경우 확인의 방법·절차·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8항 확인 및 증명 생략

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및 증명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p.298 : 규칙 제58조 ② 신설

법 제102조 제1항 관련 시행규칙

사후관리면제 [규칙 제58조]

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서 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.

- ① 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물품(세울불균형물품의 면세 규정에 따른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)
- ② 법 제93조 제19호의 자원(특정물품의 면세 등 규정에 따른 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)
- ③ 법 제95조 제1항 제1호의 물품(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(소음 및 진동 포함)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·기구·시설·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) 중 자동차의 부분품

개정 전	개정 후
<p>① 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물품(세울불균형물품의 면세 규정에 따른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)</p> <p>② 법 제95조 제1항 제1호의 물품(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(소음 및 진동 포함)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·기구·시설·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) 중 자동차의 부분품</p>	<p>① 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물품(세울불균형물품의 면세 규정에 따른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)</p> <p>② 법 제93조 제19호의 자원(특정물품의 면세 등 규정에 따른 「해외자원개발 사업법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)</p> <p>③ 법 제95조 제1항 제1호의 물품(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(소음 및 진동 포함)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·기구·시설·장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) 중 자동차의 부분품</p>
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

p.798 박스 : 규칙 제16조 수정

◆ 가산할 금액의 이율 **[규칙 제16조]**

영 제30조 제2항 단서에서 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란 연 1천분의 31를 말한다.

개정 전	개정 후
연 1천분의 12	연 1천분의 31